

의안번호	2217080
의 퇴 인	이철규 의원
회 답 일	2026. 3. 31.
추계번호	26A1093

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0조의2(기술혁신사업 출연금·보조금의 관리)	○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사업 출연금·보조금을 지급받는 중소기업자를 대상으로 출연금·보조금의 집행기준 및 정산절차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(제1항) ○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혁신사업 출연금·보조금의 집행 또는 정산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연금·보조금 지급방식의 조정, 현장방문점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음(제2항) ○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출연금·보조금의 집행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혁신사업의 수행기간 중 정기점검을 실시할 수 있음(제5항)	재량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등 근거 규정
1	안 제10조의2(기술혁신사업 출연금·보조금의 관리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은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하여금 기술혁신사업 출연금·보조금을 지급받는 중소기업자를 대상으로 출연금·보조금의 집행기준 및 정산절차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, ②기술혁신사업 출연금·보조금의 집행 또는 정산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출연금·보조금 지급방식의 조정, 현장방문점검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며,

③출연금·보조금 집행 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기술혁신사업 수행기간 중 정기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

-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기술혁신사업 출연금·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, 현장방문점검 및 정기점검 등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재정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
- 이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는 기술혁신사업 출연금·보조금을 지급받는 중소기업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, 교육 실시 방법, 출연금·보조금 집행 현황 등을 확인하기 위한 현장방문점검 및 정기점검의 실시 주기 및 점검 인력의 규모 등에 따라 결정될 것이나, 추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알 수 없으므로 소요 비용을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
 - 안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 실시 비용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등 교육 진행 방식, 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내용 등에 따라 결정될 것이나, 현 시점에서는 자료의 부재 등으로 교육 진행 방식 및 교육 내용 등을 합리적으로 가정할 수 없음
 - 안 제10조의2제2항은 현장점검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하위 법령인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정부의 정책 방향 및 재정 여건에 따라 집행 내용 및 규모 등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나, 현 시점에서 이를 알 수 없으므로 소요 비용을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
 - 안 제10조의2제5항 역시 기술혁신사업의 수행기간 중 정기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면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정기점검의 실시 여부 및 실시 주기, 규모 등을 현 시점에서 합리적으로 가정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음
- 이에 중소벤처기업부가 기술혁신사업 출연금·보조금을 지급받는 중소기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, 현장방문점검 등 조치를 하며, 사업 수행기간 중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데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할 수 없으므로,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에 해당

Ⅲ. 부대의견

☐ 없음

Ⅳ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주계세제총괄과	장설희	김신애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장설희	02-6788-4654	shjang@assembly.go.kr